

의안번호	제140호
의결연월일	2020. 10. 21.

논산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년 10월 13일 논산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20년 10월 13일
- 다. 상정일자 : 2020년 10월 21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## 2. 제안 설명요지 (제안 설명자 : 도시정책과장)

### 가. 제안이유

- 법령의 위임 없이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강제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기 위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용자를 받은 사람이 상환금을 체납할 경우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도록 한 규정은 법령의 위임 없이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써 단서조항을 삭제(안 제10조제2항 삭제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략

## 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## 5. 토론 요지 : 생략

##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